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2021. 4.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20-32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5일(월)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7일(수)

2. 제안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사항이 기존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제2조)

다. 교육실시 방법(제3조)

라. 교육강사(제4조)

마. 교육의 유예(제5조)

바. 교육이수자 관리(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 교육실시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교육강사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의 유예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민 권익의 침해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의 제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관련된 것으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할 것임. 다만,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참석자 및 불참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